「2027년 공공배달앱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Ⅰ. 심사경과

1. **제출일자:** 2026년 10월 6일
2. **제 출 자:** 구 미 시 장
3. **회부일자:** 2026년 10월 7일
4. **상정일자:** 2026년 10월 15일
  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  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 Ⅱ. 제안 설명의 요지

1. **제안 설명자: 골목상권지원단장 김 팔 근**
2. **제안이유**

가. 본 사업은 구미시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들의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위한 사업으로,

나.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사 무 명 : 2027년 공공배달앱 운영사업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1) 추진근거

가)「지방자치법」제117조

나)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제4조, 제6조

다)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조, 제12조

2) 필요성 : 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필요

다. 위탁 사무 내용 : 공공배달앱 운영사업 전반

라.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 : 해당없음

마. 위탁기간 : 2027. 1. ~ 2027. 12.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500백만원(시비)

| 구 분 | 금액(백만원) | 산 출 근거 |
|---|---|---|
| 합 계 | 500 | |
| 직 접 비 | 462.5 | ·프로모션 지원금(안) 462.5백만원<br>– 공공배달앱 지역쿠폰 연계 할인쿠폰 166.5백만원<br>– 굿미쿠폰(평일 매일 할인쿠폰 지급) 147.6백만원<br>– 배달비 지원 90.8백만원<br>– 축제연계 할인 쿠폰 33백만원<br>– 기타 할인 프로모션 24.6백만원 |
| 간 접 비 | 37.5 | · 사무관리비 6백만원<br>· 국내여비 1.5백만원<br>· 위탁대행수수료 30백만원 |

사.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

※ 일자리경제과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(2026. 9. 28.)

아. 위탁구분 : 재계약(수탁기관 :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)

## ※ 부서의견

○ 공공배달앱 운영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.

○ 2022년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최초 위탁 이후 공공배달앱 가맹점수는 약 2배, 회원 수는 약 4.4배 증가하였으며, 연간 한정된 예산을 예산 소진 추이 모니터링 등으로 시의적절하게 집행, 정산하여 공공배달앱 운영사와 구미시간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음.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2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
3)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12조

나. 예산조치 : 2027년도 당초예산 500백만원(시비) 편성 예정

다.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 : 안건 참조

## Ⅲ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### ○ 본 동의안은

-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외식물가 안정을 위한 「공공배달앱 운영사업」의 지속 추진을 위해, 관련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수탁기관인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2021년 사업 개시 이후 가맹점 및 누적 매출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, 성과평가와 자체 감사 등에서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운영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본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에 적정한 기관으로 판단됨.
- 특히 총 5억 원의 예산으로 지역쿠폰 연계, 평일 굿미 쿠폰, 배달비 지원 및 축제 연계 프로모션 등을 다채롭게 구성하여 소비자 이용 활성화와 소상공인 실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규모가 확대(2억 -> 5억)된 만큼 사업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하고, 할인 쿠폰 지급 등의 단기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임.

## 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Ⅴ. 토　　론　　요　　지: 생　　략

Ⅵ. 소수의견의 요지: 없　　음

Ⅶ. 심　　사　　결　　과: 원안가결